

광명시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제창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1. 15.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등 10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9년 11월 19일(화)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5,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pivarate@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의사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5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 광명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5
-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 광명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29
-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 광명시 빗고을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2
- 광명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1
-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창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11월 12일

발 의 자 : 제창록·박덕수·이형덕·
조미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발언통지서의 발언종류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발언 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74조제4호, 안 제80조제4호)
- 발언통지서 발언종류 정비(안 별지 제2호)

3. 개정규칙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19. 11. 15. ~ 2019. 11. 19.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4호 중 “끼연”을 “흡연”으로 한다.

제80조제4호 중 “끼연행위”를 “흡연행위”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발 언 통 지 서	
회의명 : 제 회(정례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20 . . .)	
발언의원	(서 명)
발언종류	5분 자유발언, 보충질문, 의사진행 발언, 신상발언, 정견발언, 기타
【발언요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제창록 (2680-2508) 의원 박덕수 (2680-2532)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조미수 (2680-25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실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 3. (생략)</p> <p>4. 음식물의 섭취와 <u>끼연</u></p> <p>5.·6. (생략)</p> <p>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p> <p>1. ~ 3. (생략)</p> <p>4. 음식물의 섭취나 <u>끼연행위</u></p> <p>5. ~ 8. (생략)</p> <p>[별지 제2호 서식]</p>	<p>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흡연</u></p> <p>5.·6. (현행과 같음)</p> <p>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흡연행위</u></p> <p>5. ~ 8. (현행과 같음)</p> <p>[별지 제2호 서식]</p>								
<p>발 언 통 지 서</p> <p>회의명 : 제 회(정례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20 . .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발언의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서명)</td> </tr> <tr> <td>발언종류</td> <td>의사진행 발언, 신상발언, 질의, 토론, 보충발언, 5분 자유발언, 정견발언, 기타</td> </tr> </table> <p>【발언요지】</p>	발언의원	(서명)	발언종류	의사진행 발언, 신상발언, 질의, 토론, 보충발언, 5분 자유발언, 정견발언, 기타	<p>발 언 통 지 서</p> <p>회의명 : 제 회(정례회, 임시회) 제 차 본회의(20 . .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발언의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서명)</td> </tr> <tr> <td>발언종류</td> <td>5분 자유발언, 보충질문, 의사진행 발언, 신상발언, 정견발언, 기타</td> </tr> </table> <p>【발언요지】</p>	발언의원	(서명)	발언종류	5분 자유발언, 보충질문, 의사진행 발언, 신상발언, 정견발언, 기타
발언의원	(서명)								
발언종류	의사진행 발언, 신상발언, 질의, 토론, 보충발언, 5분 자유발언, 정견발언, 기타								
발언의원	(서명)								
발언종류	5분 자유발언, 보충질문, 의사진행 발언, 신상발언, 정견발언, 기타								

광명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11월 12일

발 의 자 : 이형덕 의원

찬 성 자 : 이일규·박성민·제창록·
현충열·김운호 의원

1. 제안이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의 범위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의 기능 규정(안 제1조~2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의 사업수행에 따른 보조금 지원범위, 지원신청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4조)
-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통일기반 구성에 기여한 회원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6조)

3. 제정조례안 : 불 임

4. 입법예고 : 2019. 11. 15. ~ 2019. 11.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체서: 불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광명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광명시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주민의 통일 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4. 남북교류협력 사업
5. 민주평통 광명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구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광명시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치분권과
입안자	의원 이형덕 (2680-6582)

관 계 법 령 발 칙 서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역회의의 회의 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의 조직·운영
3. 그 밖에 지역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지역협의회)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의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출신 지역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2. 해당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주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11월 12일

발 의 자 : 한주원·이주희·안성환·
이형덕·조미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범위에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적응·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 반영(안 제11조)

3. 개정조례안 : 불 임

4. 입법예고 : 2019. 11. 15. ~ 2019. 11.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불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지원

제11조제3항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치분권과
입안자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안성환 (2680-2520)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조미수 (2680-25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2. (생략)</p> <p>3. <u>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u></p> <p>4. ~ 6. (생략)</p> <p>② (생략)</p> <p>제11조(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① · ② (생략)</p> <p>③ 시장은 「<u>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u>」 제1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제4조(지원의 범위) ①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지원</u></p> <p>4.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u>」 제17조 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 ----- ----- -----.</p> <p>④ (현행과 같음)</p>

관계 법령 발췌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5(우선 구매) ① 법 제17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로 한다.

1. 연간 평균 5명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할 것
2. 1년 이상 월 평균근로자 수의 5퍼센트 이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할 것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11월 12일

발 의 자 : 이주희·제창록·이형덕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된 근거조항 및 업무내용 일부 개정
- 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기관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 규정(안 제2조)
-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자살예방센터의 업무 중 생명의 전화 및 온라인 상담실 운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 자살예방센터 업무에 포함되지 않아 삭제함
 - 자살예방센터의 민간위탁 선정절차, 방법, 위·수탁 협약기간 등 신설
-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19. 11. 15. ~ 2019. 11.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자살고위험군”이란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자, 자살자·자살시도자의 가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제5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번만”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8조)의 제목 “(자살예방(생명존중)센터의 설치)”을 “(자살예방센터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제5조”를 “제8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위험군”을 “위험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자살자의 유족지원 및 관리

-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익목

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를 “9월 10일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로,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1항 중 “있다”를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건강생활과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제창록 (2680-2508) 의원 이형덕 (2680-658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u> 2. <u>“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u> 3. <u>“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u> 4. <u>“자살고위험군”이란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자, 자살자·자살시도자의 가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u>
<p><u>제2조 ~ 제5조</u> (생략)</p>	<p><u>제3조 ~ 제6조</u> (현행 제2조부터 제5조까지와 같음)</p>
<p><u>제6조(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구성) ① ~ ④</u> (생략)</p> <p>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p>	<p><u>제7조(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구성) ① ~ ④</u> (현행과 같음)</p> <p>⑤ ----- - <u>한 번만</u> ----- . ----- -----</p>

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⑦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자살예방(생명존중)센터의 설

치) 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설립하거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자살 위험군 발견 및 자살관련 상담

2. ~ 5. (생략)

6. 생명의 전화 및 온라인 상담실 운영

7. (생략)

8. 자살자 유가족 상담 및 자조(自助) 모임

9. (생략)

<신설>

-----.

⑥·⑦ (현행과 같음)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9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

----- 제8조 -----

-----.

② -----
-----.

1. --- 위험자 -----

2. ~ 5. (현행과 같음)

<삭제>

7. (현행과 같음)

8. 자살자의 유족지원 및 관리

9.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신 설>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10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1조 (생략)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익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생명존중문화 조성) ① -----

----- 9월 10일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로,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업비 지원) ① -----

-----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관 계 법 령 발 취 서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자살예방센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지방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
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6.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의 위탁)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중앙자살예방센터 또는 지방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5. 29.>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에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 기관 및 단체의 전문성·인력·시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위탁하는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 6. 11.>]

□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수탁자와 “재계약”시 계약 4개월 전에 업무평가를 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17, 단서삭제 2018. 12. 21>

④ 업무 평가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의 수는 총 구성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평가 점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 등으로 따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1>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처리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⑥ 연간 위탁교부금액 5억원이상인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관계서류 및 회계장부 등 자료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8. 9>

제11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9>

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주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11월 12일

발 의 자 : 한주원·이일규·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중·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생 이모작 지원 사업을 수립함으로써 교육·취업훈련·일자리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명시장에게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의 책무를 부여함 (안 제3조)
-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 대상(안 제4조~제5조)
- 광명시 신중년 이모작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 광명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9. 11. 15. ~ 2019. 11.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체서 : 불입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층”이란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층으로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신중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교육관련 사업
2. 취업지원 및 일자리지원 사업
3. 창업 역량강화 및 협업교류지원 사업
4. 사회공헌활동 통합지원 사업
5. 건강증진 및 문화·여가지원 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운영) 시장은 제5조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신중년 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받은 시설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광명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명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신중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위원회의 기능은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일자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일자리창출과
입안자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현충열 (2680-2537)

관 계 법 령 발 체 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노후준비지원법

제6조(노후준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교육 및 통계생산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4.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 및 평가
5.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관리
6.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7.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국제협력
8. 그 밖에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2. 고령자의 자영업 창업 지원
3.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 지원
4.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5.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필요한 인력의 양성
6. 고령자 고용 강조기간의 설정과 추진
7.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의 선정과 지원
8.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는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광명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이주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11월 12일

발 의 자 : 이주희·김윤호·박성민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에서 생산, 가공된 식품이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우선 공급되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
- 광명시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민·관협력체계 구축, 광명시 먹거리 위원회 운영 등 시민의 먹거리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2. 주요내용

- 광명시 먹거리보장 기본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광명시장에게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지원과 지역 먹거리 우선 공급의 책무를 부여함(안 제4조)
- 광명시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6조~안 제7조)
-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먹거리 현장 제정(안 제8조)
- 먹거리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먹거리종합계획 시행을 위한 민·관 합동협력체제로 광명시 먹거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정함(안 제11조~제15조)

3. 제정조례안 : 불 입

4. 입법예고 : 2019. 11. 15. ~ 2019. 11.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입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광명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명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광명시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및 경기도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광명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고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국제행사 개최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먹거리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매 5년마다 광명시 먹거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
2. 분야 단계별 핵심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제11조에 따른 광명시먹거리위원회 등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종합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종합계획 시행)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호에 따른 평가를 위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를 매년 조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종합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와 소속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종합계획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먹거리현장)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기본권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자치도시 광명을 만들기 위해 먹거리 현장을 제정할 수 있다.

제9조(먹거리정책자문관)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먹거리정책자문관을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먹거리 위원회) ① 시장은 종합계획 시행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광명시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자 1명이 공동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담당 실·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자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

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담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농업과
입안자	의원 이주희 (2680-2509)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박성민 (2680-2536)

관계 법령 발췌서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현황 및 경영실태,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유형별 거래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단체의 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할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일일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충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11월 12일

발 의 자 : 현충열·박성민·이주희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관내 학교 운동부, 광명시유소년축구클럽 및 광명시리틀야구단의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사용료 감면 기준을 변경
- 시립광명야구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야구장 사용료를 관내 다른 인조잔디구장과의 형평성에 맞게 금액을 조정

2. 주요내용

- 사용료 감면 사항 정비 (안 제14조)
- 소하배수펌프장 내 광명야구장 사용료 기준 변경 (안 별표1)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입법예고 : 2019. 11. 15. ~ 2019. 11. 19.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관련부서 : 경기도 체육과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광명시리틀야구단에서 평일3시간 이내 훈련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에서 “평일 3시간 이내”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광명야구장 사용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전용사용료

(단위 : 원)

장 소	시 설 별	사 용 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평 일	토·공휴일	
시 민 운 동 장	인 조 잔디구장	축 구 경 기	관 내	40,000	60,000	*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사용인원은 300명을 기본으로 하고, 100명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징수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의 30퍼센트 - 30분~1시간 이내 : 기본사용료의 100퍼센트 * 축구경기 이외의 행사는 공익목적 이외의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은 24시간 개방한다. * 광명야구장은 체육회·생활체육회 등록 단체에 한하여 평일 8만원 주말·공휴일에 10만원으로 한다. * 사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사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관 외	60,000	90,000	
		축 구 경 기 이 행 사	관 내	80,000	120,000	
			관 외	120,000	180,000	
노 온 정 수 장 부 지	다 목 적 운 동 장	축 구 경 기	관 내	40,000	60,000	
			관 외	60,000	90,000	
		축 구 경 기 이 행 사	관 내	80,000	120,000	
			관 외	120,000	180,000	
소 하 배 수 펌 프 장	광 명 야 구 장	야 구 경 기	관 내	40,000	60,000	
			관 외	60,000	90,000	
		야 구 경 기 이 외 행 사	관 내	80,000	120,000	
			관 외	120,000	180,00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문화체육과
입안자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박성민 (2680-2536) 의원 이주희 (2680-2509)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4조(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다. 관내 초·중·고 학교 운동부 및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광명시유소년축구클럽과 광명시리틀야구단에서 <u>평일3시간 이내</u> 훈련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p>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시설전용사용료</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p>제4조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다. 관내 초·중·고 학교 운동부 및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광명시유소년축구클럽과 광명시리틀야구단에서 훈련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p>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시설전용사용료</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장소</th> <th rowspan="2">시설별</th> <th rowspan="2">사구</th> <th rowspan="2">용분</th> <th rowspan="2">단위</th> <th colspan="2">사용료</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평일</th> <th>토·공휴일</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시운동장</td> <td rowspan="4">인조잔디구장</td> <td rowspan="4">축구</td> <td rowspan="4">경기</td> <td>관내</td> <td>40,000</td> <td>60,000</td> <td rowspan="4">*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사용인원은 300명을 기본으로 하고, 100명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징수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의 30퍼센트 - 30분~1시간 이내 : 기본사용료의 100퍼센트 * 축구경기 이외 행사는 공익목적 이외의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은 24시간 개방한다. * 광명야구장은 체육회·생활체육회 등록 단체에 한하여 평일 8만원 주말·공휴일에 10만원으로 한다. * 사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사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td> </tr> <tr> <td>관외</td> <td>60,000</td> <td>90,000</td> </tr> <tr> <td>관내</td> <td>80,000</td> <td>120,000</td> </tr> <tr> <td>관외</td> <td>120,000</td> <td>180,000</td> </tr> <tr> <td rowspan="4">노은정수장부지</td> <td rowspan="4">다목적운동장</td> <td rowspan="4">축구</td> <td rowspan="4">경기</td> <td>관내</td> <td>40,000</td> <td>60,000</td> <td rowspan="4">*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사용인원은 300명을 기본으로 하고, 100명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징수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의 30퍼센트 - 30분~1시간 이내 : 기본사용료의 100퍼센트 * 축구경기 이외 행사는 공익목적 이외의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은 24시간 개방한다. * 광명야구장은 체육회·생활체육회 등록 단체에 한하여 평일 8만원 주말·공휴일에 10만원으로 한다. * 사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사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td> </tr> <tr> <td>관외</td> <td>60,000</td> <td>90,000</td> </tr> <tr> <td>관내</td> <td>80,000</td> <td>120,000</td> </tr> <tr> <td>관외</td> <td>120,000</td> <td>180,000</td> </tr> <tr> <td rowspan="4">소하배수펌프장</td> <td rowspan="4">광명야구장</td> <td rowspan="4">야구</td> <td rowspan="4">경기</td> <td>관내</td> <td>100,000</td> <td>130,000</td> <td rowspan="4">*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사용인원은 300명을 기본으로 하고, 100명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징수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의 30퍼센트 - 30분~1시간 이내 : 기본사용료의 100퍼센트 * 축구경기 이외 행사는 공익목적 이외의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은 24시간 개방한다. * 광명야구장은 체육회·생활체육회 등록 단체에 한하여 평일 8만원 주말·공휴일에 10만원으로 한다. * 사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사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td> </tr> <tr> <td>관외</td> <td>150,000</td> <td>195,000</td> </tr> <tr> <td>관내</td> <td>200,000</td> <td>260,000</td> </tr> <tr> <td>관외</td> <td>300,000</td> <td>390,000</td> </tr> </tbody> </table>	장소	시설별	사구	용분	단위	사용료		비고	평일	토·공휴일	시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축구	경기	관내	40,000	60,000	*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사용인원은 300명을 기본으로 하고, 100명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징수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의 30퍼센트 - 30분~1시간 이내 : 기본사용료의 100퍼센트 * 축구경기 이외 행사는 공익목적 이외의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은 24시간 개방한다. * 광명야구장은 체육회·생활체육회 등록 단체에 한하여 평일 8만원 주말·공휴일에 10만원으로 한다. * 사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사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관외	60,000	90,000	관내	80,000	120,000	관외	120,000	180,000	노은정수장부지	다목적운동장	축구	경기	관내	40,000	60,000	*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사용인원은 300명을 기본으로 하고, 100명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징수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의 30퍼센트 - 30분~1시간 이내 : 기본사용료의 100퍼센트 * 축구경기 이외 행사는 공익목적 이외의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은 24시간 개방한다. * 광명야구장은 체육회·생활체육회 등록 단체에 한하여 평일 8만원 주말·공휴일에 10만원으로 한다. * 사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사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관외	60,000	90,000	관내	80,000	120,000	관외	120,000	180,000	소하배수펌프장	광명야구장	야구	경기	관내	100,000	130,000	*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사용인원은 300명을 기본으로 하고, 100명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징수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의 30퍼센트 - 30분~1시간 이내 : 기본사용료의 100퍼센트 * 축구경기 이외 행사는 공익목적 이외의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은 24시간 개방한다. * 광명야구장은 체육회·생활체육회 등록 단체에 한하여 평일 8만원 주말·공휴일에 10만원으로 한다. * 사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사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관외	150,000	195,000	관내	200,000	260,000	관외	300,000	390,00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장소</th> <th rowspan="2">시설별</th> <th rowspan="2">사구</th> <th rowspan="2">용분</th> <th rowspan="2">단위</th> <th colspan="2">사용료</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평일</th> <th>토·공휴일</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시운동장</td> <td rowspan="4">인조잔디구장</td> <td rowspan="4">축구</td> <td rowspan="4">경기</td> <td>관내</td> <td>40,000</td> <td>60,000</td> <td rowspan="4">*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사용인원은 300명을 기본으로 하고, 100명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징수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의 30퍼센트 - 30분~1시간 이내 : 기본사용료의 100퍼센트 * 축구경기 이외 행사는 공익목적 이외의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은 24시간 개방한다. * 광명야구장은 체육회·생활체육회 등록 단체에 한하여 평일 8만원 주말·공휴일에 10만원으로 한다. * 사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사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td> </tr> <tr> <td>관외</td> <td>60,000</td> <td>90,000</td> </tr> <tr> <td>관내</td> <td>80,000</td> <td>120,000</td> </tr> <tr> <td>관외</td> <td>120,000</td> <td>180,000</td> </tr> <tr> <td rowspan="4">노은정수장부지</td> <td rowspan="4">다목적운동장</td> <td rowspan="4">축구</td> <td rowspan="4">경기</td> <td>관내</td> <td>40,000</td> <td>60,000</td> <td rowspan="4">*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사용인원은 300명을 기본으로 하고, 100명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징수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의 30퍼센트 - 30분~1시간 이내 : 기본사용료의 100퍼센트 * 축구경기 이외 행사는 공익목적 이외의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은 24시간 개방한다. * 광명야구장은 체육회·생활체육회 등록 단체에 한하여 평일 8만원 주말·공휴일에 10만원으로 한다. * 사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사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td> </tr> <tr> <td>관외</td> <td>60,000</td> <td>90,000</td> </tr> <tr> <td>관내</td> <td>80,000</td> <td>120,000</td> </tr> <tr> <td>관외</td> <td>120,000</td> <td>180,000</td> </tr> <tr> <td rowspan="4">소하배수펌프장</td> <td rowspan="4">광명야구장</td> <td rowspan="4">야구</td> <td rowspan="4">경기</td> <td>관내</td> <td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40,000</td> <td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60,000</td> <td rowspan="4">*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사용인원은 300명을 기본으로 하고, 100명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징수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의 30퍼센트 - 30분~1시간 이내 : 기본사용료의 100퍼센트 * 축구경기 이외 행사는 공익목적 이외의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은 24시간 개방한다. * 광명야구장은 체육회·생활체육회 등록 단체에 한하여 평일 8만원 주말·공휴일에 10만원으로 한다. * 사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사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td> </tr> <tr> <td>관외</td> <td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60,000</td> <td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90,000</td> </tr> <tr> <td>관내</td> <td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80,000</td> <td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120,000</td> </tr> <tr> <td>관외</td> <td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120,000</td> <td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180,000</td> </tr> </tbody> </table>	장소	시설별	사구	용분	단위	사용료		비고	평일	토·공휴일	시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축구	경기	관내	40,000	60,000	*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사용인원은 300명을 기본으로 하고, 100명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징수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의 30퍼센트 - 30분~1시간 이내 : 기본사용료의 100퍼센트 * 축구경기 이외 행사는 공익목적 이외의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은 24시간 개방한다. * 광명야구장은 체육회·생활체육회 등록 단체에 한하여 평일 8만원 주말·공휴일에 10만원으로 한다. * 사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사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관외	60,000	90,000	관내	80,000	120,000	관외	120,000	180,000	노은정수장부지	다목적운동장	축구	경기	관내	40,000	60,000	*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사용인원은 300명을 기본으로 하고, 100명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징수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의 30퍼센트 - 30분~1시간 이내 : 기본사용료의 100퍼센트 * 축구경기 이외 행사는 공익목적 이외의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은 24시간 개방한다. * 광명야구장은 체육회·생활체육회 등록 단체에 한하여 평일 8만원 주말·공휴일에 10만원으로 한다. * 사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사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관외	60,000	90,000	관내	80,000	120,000	관외	120,000	180,000	소하배수펌프장	광명야구장	야구	경기	관내	40,000	60,000	*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사용인원은 300명을 기본으로 하고, 100명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징수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의 30퍼센트 - 30분~1시간 이내 : 기본사용료의 100퍼센트 * 축구경기 이외 행사는 공익목적 이외의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은 24시간 개방한다. * 광명야구장은 체육회·생활체육회 등록 단체에 한하여 평일 8만원 주말·공휴일에 10만원으로 한다. * 사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사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관외	60,000	90,000	관내	80,000	120,000	관외	120,000	180,000
장소						시설별	사구		용분	단위					사용료		비고																																																																																																										
	평일	토·공휴일																																																																																																																									
시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축구	경기	관내	40,000	60,000	*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사용인원은 300명을 기본으로 하고, 100명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징수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의 30퍼센트 - 30분~1시간 이내 : 기본사용료의 100퍼센트 * 축구경기 이외 행사는 공익목적 이외의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은 24시간 개방한다. * 광명야구장은 체육회·생활체육회 등록 단체에 한하여 평일 8만원 주말·공휴일에 10만원으로 한다. * 사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사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관외	60,000	90,000																																																																																																																					
				관내	80,000	120,000																																																																																																																					
				관외	120,000	180,000																																																																																																																					
노은정수장부지	다목적운동장	축구	경기	관내	40,000	60,000	*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사용인원은 300명을 기본으로 하고, 100명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징수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의 30퍼센트 - 30분~1시간 이내 : 기본사용료의 100퍼센트 * 축구경기 이외 행사는 공익목적 이외의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은 24시간 개방한다. * 광명야구장은 체육회·생활체육회 등록 단체에 한하여 평일 8만원 주말·공휴일에 10만원으로 한다. * 사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사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관외	60,000	90,000																																																																																																																					
				관내	80,000	120,000																																																																																																																					
				관외	120,000	180,000																																																																																																																					
소하배수펌프장	광명야구장	야구	경기	관내	100,000	130,000	*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사용인원은 300명을 기본으로 하고, 100명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징수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의 30퍼센트 - 30분~1시간 이내 : 기본사용료의 100퍼센트 * 축구경기 이외 행사는 공익목적 이외의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은 24시간 개방한다. * 광명야구장은 체육회·생활체육회 등록 단체에 한하여 평일 8만원 주말·공휴일에 10만원으로 한다. * 사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사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관외	150,000	195,000																																																																																																																					
				관내	200,000	260,000																																																																																																																					
				관외	300,000	390,000																																																																																																																					
장소	시설별	사구	용분	단위	사용료		비고																																																																																																																				
					평일	토·공휴일																																																																																																																					
시운동장	인조잔디구장	축구	경기	관내	40,000	60,000	*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사용인원은 300명을 기본으로 하고, 100명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징수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의 30퍼센트 - 30분~1시간 이내 : 기본사용료의 100퍼센트 * 축구경기 이외 행사는 공익목적 이외의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은 24시간 개방한다. * 광명야구장은 체육회·생활체육회 등록 단체에 한하여 평일 8만원 주말·공휴일에 10만원으로 한다. * 사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사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관외	60,000	90,000																																																																																																																					
				관내	80,000	120,000																																																																																																																					
				관외	120,000	180,000																																																																																																																					
노은정수장부지	다목적운동장	축구	경기	관내	40,000	60,000	*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사용인원은 300명을 기본으로 하고, 100명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징수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의 30퍼센트 - 30분~1시간 이내 : 기본사용료의 100퍼센트 * 축구경기 이외 행사는 공익목적 이외의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은 24시간 개방한다. * 광명야구장은 체육회·생활체육회 등록 단체에 한하여 평일 8만원 주말·공휴일에 10만원으로 한다. * 사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사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관외	60,000	90,000																																																																																																																					
				관내	80,000	120,000																																																																																																																					
				관외	120,000	180,000																																																																																																																					
소하배수펌프장	광명야구장	야구	경기	관내	40,000	60,000	* 사용료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 사용인원은 300명을 기본으로 하고, 100명 초과 시마다 기본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이용시간 초과 시 사용료는 다음과 같이 추가 징수한다. - 30분 미만 : 기본사용료의 30퍼센트 - 30분~1시간 이내 : 기본사용료의 100퍼센트 * 축구경기 이외 행사는 공익목적 이외의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시민운동장 우레탄 트랙은 24시간 개방한다. * 광명야구장은 체육회·생활체육회 등록 단체에 한하여 평일 8만원 주말·공휴일에 10만원으로 한다. * 사용료는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월 사용료의 2배 할증 또는 100분의 3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인근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사용료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관외	60,000	90,000																																																																																																																					
				관내	80,000	120,000																																																																																																																					
				관외	120,000	180,000																																																																																																																					

관 계 법 령 발 취 서

관 계 법 령	내 용
<p>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p>	<p>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p> <p>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p>
<p>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p>	<p>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17. 12. 29.></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광명시 빚고을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19년 11월 12일

발 의 자 : 박성민·이일규·제창록·
이형덕·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광명시 빚고을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광명시 빚고을 택시의 운행지역, 이용대상 및 운행방법(안 제3조~제5조)
- 광명시 빚고을 택시 운송사업자 지정 등(안 제6조)
- 빚고을 택시 이용자의 비용부담 및 지원범위(안 제8조)
-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비용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운행비용지원액의 사용내역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 불 임

4. 입법예고 : 2019. 11. 15. ~ 2019. 11.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불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광명시 빗고을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광명시 빗고을 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고을 택시”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비정기적·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광명시 공공형 택시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행지역) 광명시 빗고을 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마을 중에서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1. 시내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등(이하 “노선버스”라 한다)이 운행되지 않는 마을
2. 경로당 등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 있거나, 노선버스 배차 간격이 1시간을 초과하는 마을
3. 시 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공공성 및 수익성 등으로 현재 또는 향후 일부 구간 폐지를 고려하는 마을

제4조(이용대상) 광명시 빗고을 택시 이용대상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으로 한다.

제5조(운행방법) 광명시 빗고을 택시는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이 요청한 시간, 장소에 따라 운행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 운행지역 대상 마을은 광명6동(두길마을·식곡마을), 광명7동(원광명마을), 학운동(장절리마을·공세동마을·노리실마을·장터마을) 소재지 및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 관할 내 소재지로 한다.
2. 매일 운행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마을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운송사업자 지정 등) ① 광명시 빗고을 택시에 참여하려는 관내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빗고을 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빗고을 택시 운송사업자로 지정 받은 자는 별제 제3호 서식의 운행 일지를 지정된 택시 내에 갖추어 두고 빗고을 택시 이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자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광명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빗고을 택시 운행대상 마을 선정과 운행방법 등 택시 운행 전반에 관한 사항
2. 빗고을 택시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급·정산의 적정여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비용부담 및 지원범위) 빗고을 택시 이용자는 택시 이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1회에 한해 일천오백원을 부담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① 지원금은 빗고을 택시 운송사업자가 신청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빗고을 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빗고을 택시 운행 운수종사자와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빗고을 택시 운행일지를 택시 내에 비치하여 이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차량 운행내역을 콜센터 전산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행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미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빗고을 택시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 서류의 형식적·내용적 적정성 여부
2.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운행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을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콜택시 대표자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콜택시 대표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수종사자 또는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차비용을 신청

하거나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하고, 해당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교통과
입안자	의원 박성민 (2680-2536)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제창록 (2680-2508) 의원 이형덕 (2680-6582) 의원 현충열 (2680-2537)

[별지 제3호 서식]

빛고을 택시 운행일지

순번	운행일자	운행구간		운행거리 (km)	운행요금(원)				이용자			
		출발지 (시간)	도착지 (시간)		전체요금 ①=②+③		이용자 부담요금 ④	차액 ⑤=①-④	인원	대표자	서명	
					택시요금 ②	호출비용 ③						
계												
1												
2												
3												
4												
5												
6												
7												
8												
9												
10												
확 인 자					운 송 사 업 자							
					(인)	성 명	(인)					
					(인)	차 량 번 호						
					(인)	운 행 기 간						

관계법령발췌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 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대중교통현황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관련 사회·경제적 지표
2.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여건
3.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현황
4. 대중교통의 이용실태
5. 차종별 교통량 현황 및 대중교통수단의 시간대별 도로별 운행속도

6. 그 밖에 대중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대중교통 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 및 결과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광명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윤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11월 12일

발 의 자 : 김윤호·이일규·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이형덕 의원

1. 제안이유

- 광명시 택시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조~5조의2)
-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 위탁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쉼터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 불 임

4. 입법예고 : 2019. 11. 15. ~ 2019. 11. 19.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불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광명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광명시 택시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광명시 택시운수종사자”란 광명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민의 안전한 택시 이용에 기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편안히 쉴 곳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명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쉼터는 광명시 관내의 장소로 시장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한다.

제4조(사용자 등) ① 쉼터의 사용대상은 광명시 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

② 사용자는 쉼터를 휴식 및 회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09:00~18: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여건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의2(위탁관리) 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쉼터의 운영·관리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광명도시공사

② 시장은 택시 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쉼터의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 시 수탁자에게 컴퓨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컴퓨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또는 재산관리상의 이유로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9조(컴퓨터 사용) ①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컴퓨터의 일부를 택시관련 단체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컴퓨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

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③ 컴퓨터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교통과
입안자	의원 김윤호 (2680-2538)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현충열 (2680-2537)

관계법령발췌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주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9년 11월 15일

발 의 자 : 한주원·이일규·현충열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적용하는데 있어 자원봉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우수자원봉사자들에게 주차요금을 경감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과 편의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또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봉사자의 자가운전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하는 내용(안 제6조)

3. 개정조례안 : 불 임

4. 입법예고 : 2019. 11. 15. ~ 2019. 11. 19.

5.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발췌서: 불임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2호에 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과.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 우수자원봉사자증 또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에서 발행한 총 봉사시간이 100시간 이상으로 표기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봉사자: 50퍼센트(다만, 유효기간 내의 우수자원봉사자증에 한정함)

제6조제4항제3호 중 “차목부터 타목”을 “차목부터 과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시교통과
입안자	의원 한주원 (2680-2542) 의원 이일규 (2680-2539) 의원 현충열 (2680-2537)

관 계 법 령 발 체 서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 1. 19.>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